

채무면제·유예상품 헬스플랜 세부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구분	내용
상품 개시	· 상품 가입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 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부과	·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임

사망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 사망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채무면제·유예상품 헬스플랜 세부약관

치명적 질병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 (주요 장기 이식 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 이식수술의 입증서류 (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치명적 장애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장기입원

구분	내용
보장 제공기준	· 보장 대상자에게 "장기 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장기 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함 (단,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채무액 산정일	· 입원개시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장 청구서, 입원 입증서류(입원/퇴원확인서 등)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61일 계속 입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한 사항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전쟁 및 유사사태로 입원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